2021년 3월 1일 시행

군산 공립중학교교원 및 영양교사 인사관리기준

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

홈페이지 http://jbgse.kr/정보마당/ 인사정보/ 교원인사에 탑재되어 있습니다.

차 례

제1장	총칙	3
제2장	정원관리	3
제3장	신규교원 학교 배치	4
제4장	보직교사 임용	4
제5장	교사(수석교사)전보	5
제6장	교감전보	7
부 칙		8

군산 공립중학교교원 및 영양교사 인사관리기준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(목적)

이 기준은 교육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 및 전북중등교원인사관리기준과 영양교사인사관리기준에 의거, 인사자문위원회의 자문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산지역 교원 인사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.(2020.8.6. 개정)

제 2 조(적용범위)

이 기준은 군산관내 공립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원(교감, 교사)과 <mark>군산관내 영</mark>양교사에게 적용한다.(2020.8.6. 개정)

제 3 조(인사관리)

이 기준은 전북중등교원인사관리기준과 영양교사인사관리기준에 준하여 시행한다.(2020.8.6. 개정)

제 2 장 정 원 관 리

제 4 조(교사 정원관리)

- 1.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및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40조(특수학교 등의 교원)에 따라, 전라북도교육 청에서 배정한 학교별 교사 정원을 배정한다. <개정 2013.12.16.>
- 2. 각 학교의 교과별 정원은 해당 학교에 배정된 교사 정원 내에서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에 따라 학교장이 산출한다.

3.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학교를 순회 근무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 교사 정원을 배정할 수 있다. 또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해당 학교장의 요청과 교사 소속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, 교과별 순회근무 교사를 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3.12.16.>

제 3 장 신규 교원 학교 배치

제 5 조(신규교원의 학교 배치)

- 1. 신규교원은 가급적 경합교에는 배치하지 않는다. 단, 음악, 미술, 체육지정 종목 육성학교에는 본인의 특기를 참작하여 배치할 수 있다.
- 2. 본인이 특별히 희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도서지역의 중학교에 임용하지 않는다. 단, 도서지역의 중학교에 전입 희망자가 없을 때와 학기 도중에는 예외로 한다.

제 6 조(기간제교사의 임용)

- 1. 기간제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의하여 교원이 법 제4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휴직하거나, 파견, 연수, 정직, 직위해제 등의 사유로 1개월 이상 직무를 이탈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임용할 수 있다.
- 2. 기간제교사의 임용은 전라북도 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제8조 제9항에 따라 학교장이 임용하며 기간제교사의 임용기간은 정규교사 발령 시 즉시 퇴직한다.

제 4 장 보직교사 임용

제 7 조(정원) 전라북도교육청 중등인사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한다.<개정 2013.12.16.>

제 8 조 (임용기준) 전라북도교육청 중등인사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한다. <개정 2013.12.16.>

제 9 조(임용권) 전라북도교육청 중등인사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한다.<개정 2013.12.16.>

제 5 장 교 사(**수석교사 포함**) 전 보<개정 2017.8.16.>

제 10 조(인사지역)

"도서외", "도서"로 분리하여 인사 한다.

제 11 조(전보시기)

정기 전보는 매 학년말에 실시하고 학기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충원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전보할 수 있다.

제 12 조(전보원칙)

1.전라북도 교육청에서 본 시로 발령된 교사와 관내 전보 희망교사 중에서 임지 배정하는 데 경합될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신설중학교 개교 준비위원 교사는 우선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, 영양교사의 임비재정은 전라북도교육청 서열부에 따른다.(2020.8.6. 개정)

2. 전보순위

- 가. 관내 감축 교사
- 나. 삭제 <개정 2013.12.16.>
- 다. 관내 일반 전보 교사
- 라. 타 시 · 군 전입 교사
- 마. 복직 교사
- 바. 타 시 · 도 전입 교사
- 사. 신규 임용 교사

제 13 조(전보희망인원)

학교장은 소속 학교 교사 정원의 1/2이내(순환 전보, 일반 전보 내신자 포함)에서 전보 내신을 한다. 단, 도서지역중학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2. 교육지원청 관할센터 소속교사는 센터별 1/2이내에서 전보내신 할 수 있다. <신설 2014.04.30.> 제 14 조(음악, 미술, 체육 특기교사의 전보)

음악 특기(성악, 현악, 국악)와 미술특기, 체육 지정 종목 육성학교는 학교 장의 내신과 본인의 동의에 의해서 해당 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.

제 15 조(관내 전보)

- 1. 삭제 <개정 2013.12.16.>
- 2. 관내 일반 전보는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대상

동일교 2년 이상 근속하고 2년이상 군산지역 근속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. <개정 2014.04.30.. 2015.02.12.>

나. 방법

- 1) 전보 학교는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3개 학교내에서 희망한다.
- 2) 전보는 교과별(중학교 사회과와 과학과, 기술가정과는 통합교과로 작성)전보 서열부를 작성하고 서열에 의하여 전보한다. 다만, 전보 서열부에 등재가 없을 때에는 추가 내신에 의거 전보할 수 있다.<개정 2017.8.16.>
- 3. 전보 서열부는 다음에 의하여 작성한다.
- 가. 전보 <u>희망</u>을 받은 교사의 교과별 전보 서열부를 다음 항목의 평정점으로 한다.
 - 1) 현임교(교육청)근무 최근 4년 이내의 지역근속경력(도서가산점 제외)
 - 2) 삭제<개정 2017.8.16.>
 - 3) 교육경력
 - 4) 기타 가산점
 - 포상
 - 지도상
 - 체육 무용 지도 가산점
 - 영재교육 유공가산점
 - 3자녀 이상(가장 어린 자녀가 만 19세 미만까지 적용)을 둔 교사 가산점 <개정 2019.8.1.>
 - 노부모 봉양과 장애인 부양 교사 가산점 둘 중 택일<개정 2019.8.1.>
 - 순직 교원 배우자 가산점
 - 학급담임 또는 순회교사 중 유리한 점수 선택 <개정 2013.12.16., 2014.04.30., 2015.2.12.>
- 나. 평정 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다음 순으로 전보한다.
 - 1) 동일교 근무 연한이 많은 자

- 2) 근속 호봉이 높은 자
- 3) 삭제<개정 2017.8.16.>
- 4) 생년월일이 빠른 자
- 4. 교과별 전보서열 평정 자료의 평정점은 당해년도 전라북도 중등인사관리기 준에 준한다.
- 5. 영양교사의 관내전보는 초·중·고 학교급을 통합하여 학교급이 다를때도 인정한다.(2020.8.6. 신설)

제 16 조(도서지역 중학교 전보)

도서지역 중학교 희망자 중 다음 순위로 한다. 단, 도서 지역 학교에 근속경력이 있는 교사는 도서 지역 학교에 전보하지 **않으나, 도서벽지제한 신규교사로 임용되어 8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제외한다**. 2년이상 군산지역 근속가능한 자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4.04.30.><개정 2017.8.16.>

- 1. 경합 시 전보 순위
- 가. 삭제 <개정 2013.12.16.>
- 나. 관내 일반 전보 교사 (관내 감축 교사는 관내 일반 전보 교사에 준한다.)
- 2. 희망자가 없는 경우
- 가. 신규임용교사, 타 시·도 전입 교사, 타 시. 군 전입교사, 복직교사 순으로 정한다. <개정 2014.04.30.>
- 나. 같은 조건일 때는 생년월일이 늦은자를 우선 배정한다. <신설 2014.04.30.> 3. 전보 방법은 제15조 2항, 3항에 따른다.<개정 2013.12.16.>
- 제 17조 (긴급전보대상교사) 전라북도교육청 중등인사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한다. <개정 2013.12.16.>

제 6 장 교 감 전 보

제 18 조(전보원칙) 전라북도교육청 중등인사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한다. <개정 2013.12.16.>

- 제 19 조(배정학교) 전라북도교육청 중등인사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한다. <개정 2013.12.16.>
- 제 20 조(방법) 전라북도교육청 중등인사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한다.<개정 2013.12.16.>
- 제 21 조 (전보 유예) 전라북도교육청 중등인사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한다. <개정 2013.12.16.>

부 칙

(2008.12.12 전라북도군산교육청 인사위원회 결정에 의거 개정 및 신설)

- 제10조 신설, 제15조 제2항 개정, [별표 3] 삭제
- 이 기준안은 2009.3.1부터 시행한다(단, 제10조는 2012.3.1, 제15조제2항나의1은 2010.3.1부터 시행, [별표3] 2010.3.1부터 시행)

부 칙

(시행일) 이 기준은 2009학년도 학년말 인사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2011.01.17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 결정에 의거 개정 및 신설)

- 제15조 제3항 "가"의 가산점 추가 신설항목 그리고 별표2, 별표3(2010.03.01부터시행),별표4-1,별표4-2, 별표4-3,(기존 별표 4-3은 삭제), 별표 4-4의 50%축소 적용과 별표 4-7, 별표 4-8, 별표 4-9의 신설 가산점 적용은 2011학년도학년말 인사시부터 시행한다.
- 이 기준은 2011학년도 학년말 인사시부터 시행한다. (2010학년도 말 인사는 기존 인사관리기준에 의해 시행한다.)

부 칙(2011.12. .)

제1조 (시행일) 이 기준은 2012년 3월 1일 인사 때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기타) 이 기준안에 명시되지 않은 인사에 관한 사안이 발생한 때는 전라북도교육청 인사관리기준 및 군산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의 결정에의한다.

부 칙(2013.12.16.)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14년 3월 1일 인사 때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4.04.30.)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15년 3월 1일 인사 때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5.02.12.)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15년 3월 1일 인사 때부터 시행한다. 제2조 (경과조치) 제15조(관내전보) 가. 대상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7.08.16.)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18년 3월 1일 인사 때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9.08.1.)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20년 3월 1일 인사 때부터 시행한다. ○ 제15조 제3항 "가"의 4)기타 가산점 개정

부 칙(2020.08.6.)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21년 3월 1일 인사 때부터 시행한다.